##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해식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325 발의연월일: 2024. 6. 11.

발 의 자:이해식・서영교・조 국

박상혁 • 윤준병 • 정을호

한병도 • 염태영 • 김태선

황명선 • 박정현 • 서영석

의원(12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고 활성화되면서 주민자치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현행법에 규정된 주민자치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사항을 「지방자치법」으로 이동하여 그 기능을 확대하고 구성에 대한 사항을 구체화하려 함(안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삭제 등).

### 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이해식의원이 대표발의한 「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 안」(의안번호 제324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 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 어야 할 것임.

법률 제 호

#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2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제15조에 따른 주민참여 확대 방안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.

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조(자치분권 종합계획의 수립)	제5조(자치분권 종합계획의 수립)
① (생 략)	① (현행과 같음)
② 자치분권 종합계획은 다음	②
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	
다.	<b>.</b>
1. ~ 3. (생 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<u> &lt;신 설&gt;</u>	4. 제15조에 따른 주민참여 확
	<u>대 방안</u>
<u>4</u> . (생 략)	<u>5</u> . (현행 제4호와 같음)
③ ~ ④ (생 략)	③ ~ ④ (현행과 같음)
제27조(주민자치회의 설치) 풀뿌	<u>&lt;삭 제&gt;</u>
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	
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・면	
·동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	
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를	
<u>둘 수 있다.</u>	
제28조(주민자치회의 기능) ① 제	<u>&lt;삭 제&gt;</u>
27조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설	
치되는 경우 관계 법령, 조례	
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	
라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일부	
를 주민자치회에 위임 또는 위	
<u>탁할 수 있다.</u>	

- ②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- 주민자치회 구역 내의 주민
   화합 및 발전을 위한 사항
- 2. 지방자치단체가 위임 또는위탁하는 사무의 처리에 관한사항
- 3. 그 밖에 관계 법령, 조례 또는 규칙으로 위임 또는 위탁한 사항
- 제29조(주민자치회의 구성 등) ①
 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조례로
 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
  체의 장이 위촉한다.
  -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하며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  - ③ 주민자치회의 설치 시기, 구성, 재정 등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.
  -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주민자치 회의 설치 및 운영에 참고하기 위하여 주민자치회를 시범적으

<삭 제>

 로 설치・운영할 수 있으며, 이

 를 위한 행정적・재정적 지원

 을 할 수 있다.